



삼일회계법인

지방세 전문팀



Foreword

1949년 단일법으로 제정된 지방세는 일부 관련 종사자를 제외하면 그 법체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최근까지 공과금 중 하나로 치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는 물론 세무전문가들조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침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세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일법체계로 60년간 존속했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하였고, 지방세법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감면조례 등에 산재되었던 지방세 감면 조항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모두 이관·통합되었습니다.

둘째, 지방세 불복절차에서 행정소송 제기 이전에 심사·심판청구의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셋째, 과거 기한 제한 없이 운영되던 비과세·감면은 일몰방식으로 바뀌어 일몰 시 지방세 감면 연장 여부와 감면을 축소 여부를 매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세 징수액은 2020년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로 매년 증가하여 2024년 기준 114조원에 이르렀으며, 전체 조세수입(2024년 국세와 지방세 총 450조 원)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25%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방세 비중은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방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팀(20여 명)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지방세 파트너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문팀 파트장

정복석 Partner



지방세 전문팀 업무



취득세 신고 업무(감면신청포함)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기한 내에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 20% 무신고, 10%의 과소신고, 1일 0.022%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2018.12.31. 이전 기간은 0.03%, 2022.6.6 이전 기간분에 대해서는 0.025% 적용)
- 2016년 법 개정으로 무신고시 추징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

지방세 전문팀은 적절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성 검토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근거한 감면 대상 여부 검토
- 대도시 내 본·지점 중과세 해당 여부 검토 등



주요 고객

L그룹사(전자, 전기, 화학 등), A사(화장품 제조업), S사(호텔업), S사(제조업), E사(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N사(재단), H사(건물개발 및 공급업), B사(건설업), 부동산을 건축한 법인, ○○자산운용, ○○에셋 등



지방세 세무조사 지원 업무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 20%~80%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누락된 세액을 추징
- 탈루에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조세범 고발 조치

지방세 전문팀은 서면·현장조사에 대응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대변함

- 지방세 전문 회계사, 변호사 등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



주요 고객

○○제강, ○○케미칼, ○○잉크, ○○엔터테인먼트, PC사, ○○코리아, ○○전자, ST사, ○○가스, ○○건설, ○○테크놀로지, ○○대학교, ○○시멘트, H사(백화점 및 임대업), S사(임대업) 등



지방세 불복 업무

지방세 전문팀은 합리적인 논리와 법리,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방세 불복 업무를 수행해온 결과, 수많은 고객들의 어려운 지방세 사건을 수임하여 납세자들로부터 전문가적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예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 지방세 불복절차에도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함



주요 고객

○○신탁, ○○골프장, ○○건설, ○○중공업, ○○화학, ○○제련, ○○산업, ○○텔레콤, JW사, ○○파트너스, ○○시티, ○○리조트, 학교법인○○, ○○공사, ○○디스플레이, ○○개발, SI사, ○○연구원, ○○케이프, ○○포스트 등



지방세 세무진단 및 잠재환급 업무

최근 과세 동향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에 맞는 지방세 자문 서비스를 제공

-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지방세 질의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분석

과다 신고납부한 지방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과거 납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 신고납부한 내역을 색출
- 지방세 전문팀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 서비스를 제공



주요 고객

DB사, ○○신탁, ○○테크, ○○재단, ○○가스, ○○건설, ○○전자, ○○시행사, ○○공단, ○○공사, ○○학교, ○○엔터테인먼트, ○○화학, ○○쇼핑, ○○개발, ○○자산운용, 기타 부동산 및 지점 보유 법인, 과점주주(개인 포함) 등



유권해석 및 제도개선 건의 업무

지방세 전문팀은 관계 기관 및 과세권자 등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유권해석 및 제도 개선 건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유권해석 업무

- 지방세법 조문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 납세의무자의 사실관계가 해당조문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도 개선 건의 업무

- 현행 법령상 입법 미비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불합리하게 중과세를 적용받거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여 법령의 신설·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주요 고객

다수의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관광, ○○건설, ○○리조트, ○○골프앤리조트, ○○개발, ○○클럽, ○○레저, ○○관광개발, ○○센타 등), ○○신탁, ○○공사, ○○PFV, ○○기업도시, ○○재단, C사, L사, H사



지방세 전문팀 구성원

정복석 Partner

M : 010-3209-7174
E : boksuk.jung@pwc.com
삼일회계법인 지방세팀 파트장

양인병 Partner

M : 010-8011-2931
E : in-byoung.yang@pwc.com
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근무
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윤예원 Partner

M : 010-9105-0533
E : ye-won.yoon@pwc.com

김수정 Partner

M : 010-9009-1814
E : su-jeong.kim@pwc.com

김진우 Partner

M : 010-4609-2791
E : jin-woo_2.kim@pwc.com

박영모 전문위원

M : 010-8770-1985
E : youngmo.park@pwc.com
전)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도세팀장
전)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조사관
현) 서울시 강남구, 충청북도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조영재 전문위원

M : 010-9255-9319
E : young-jae.cho@pwc.com
공인회계사회 지방세심의위원

이민교 전문위원

M : 010-2778-5793
E : minkyo.lee@pwc.com
전) 행정안전부 세정과 도세팀장
전) 조세심판원 지방세 심판부 과장

조조익 전문위원

M : 010-3797-6398
E : cho-ik.cho@pwc.com
전) 서울시청 세무과장(부이사관 퇴직)
현) 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장

정수호 전문위원

M : 010-5772-2908
E : suhyo.jung@pwc.com
전)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복무감찰팀장

정창욱 전문위원

M : 010-7556-5423
E : changwook.jeong@pwc.com
전) 용인시 세정과 및 토지정보과 근무
전)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협력실 근무

박희현 회계사
hi-hyun.park@pwc.com

장소영 회계사
soyoung.jang@pwc.com

김가현 회계사
gahyun.kim@pwc.com

이다나 회계사
dana.lee@pwc.com

이외 13명 실무회계사 소속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607T-BR-047

© 2026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Korea group of member firms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